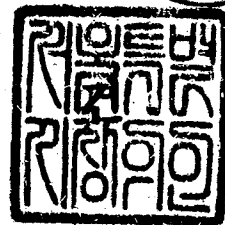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폐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고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98.7.1)으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법에 의거 제정·운용되고 있던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이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 이웃돕기사업은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로 이관되어 민간주도로 계속 수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2
7월 11일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3707-9851 ~ 4 / 전송 3707-9859
 처리부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서소문별관 11층) / 담당관 김효수 팀장 김호연 담당 이용식

문서번호	주진 12230-	선		지	
시행일자	'98. 12. 26	결	주진	시	
수신	법무담당관	일	자	결	
참조		접	시	재	
		수	간	채	
		번호	1998. 12. 28	·	
		처리과	29869	공	
		담당자	김호연	람	

제 목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훈령) 폐지 발령의뢰

1. 조직 12230-874('98.9.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운용해 온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훈령)"을 별첨과 같이 폐지 발령코자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훈령)폐지 방침 1부.

2)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폐지안 1부. 끝.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건축담당관 김효수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동 훈령을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97.7.10 신청사건립 부지로 용산지역을 선정·건의한 이후 부지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자문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 상태이며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이 당분간 유보됨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기능 유지 및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동 훈령을 폐지코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 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없 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3707-9851 ~ 4 / 전송 3707-9859
 처리부서 :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서소문빌관 11층) / 담당관 김효수 팀장 김호연 담당 이용식

문서번호	주건 12230-	취급		행정2부시장
시행일자	'98. 12.	보존		
(경유)		건설단장	김치훈 김학래	
수신	내부결재	건축 담당관	김효수 총무과장 권영규	
참조			조직제도담당관 이경희	
		기안	행정팀장 김호연 98.12.23	협조



제 목: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훈령) 폐지 000661

1. 조직 12230-874('98.9.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운용해 온 "서울특별시신청사 건립자문위원회규정(훈령)"을 위원회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별첨과 같이 폐지코자 합니다.

첨 부 : 1)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훈령)폐지 1부.
 2)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폐지안 1부. 끝.

서울特別市新廳舍建立諮問委員會規程(훈령) 廢止

- 신청사건립 추진이 시소문별관의 보수 사용으로 다소 완화된 청사 여건과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유보됨에 따라
- 그동안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운용해 온 “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규정(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 諮問委員會 運營 現況

- 구 성 : '96.8.26
- 회의개최 : 10회 (주요 내용)
 - '96.8~'97.7 : 신청사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자문 및 의견 수렴
 - '97.7.10 : 신청사건립부지 용산지역 선정 건의 및 부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결의

□ 廢止 檢討 및 理由

-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자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동 훈령을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 '97.7.10 신청사건립 부지로 용산지역을 선정·건의한 이후 부지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자문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 상태이며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이 당분간 유보됨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기능 유지 및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동 훈령을 폐지코자 함.

1998 12 23
부시장

□ 向後 對策

- 추후 신청사건립이 정상 추진될 경우 현실에 맞게 재구성 하거나
- 기존 다른 위원회에 자문의뢰 및 의견 수렴으로 추진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폐지안

제정시 년월일	1997. 7. 23	제 회	26
담당자	법제실사 장	담당	법무담당
성명	이홍범	직위	박승우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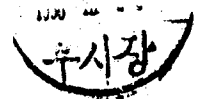
신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동 훈령을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97.7.10 신청사건립 부지로 용산지역을 선정·건의한 이후 부지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자문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 상태이며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이 당분간 유보됨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기능 유지 및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동 훈령을 폐지코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특기사항 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폐지^{개정}안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38 12 20
부시장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규정

[1973. 5. 20
훈령 제406호]

개정 1990. 7. 23 훈령 제708호

1992. 3. 30 훈령 제750호

1996. 5. 20 훈령 제838호

1996. 8. 16 훈령 제8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종합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5. 20)

제2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96. 5. 20)

1.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자금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건립건축자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종합청사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장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한다(개정 '96. 8. 16)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 5. 20)

③위원은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 등으로 구성토록 하되,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96. 5. 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령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6. 5. 20)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방침에 의한다(개정 '96. 5. 2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96. 5. 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기회단장이 되고 서기는 신청사기회단 행정계장이 된다(개정'96. 5. 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96. 7. 23)

1. 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소집, 연락에 관한 사항(개정'96. 5. 20)
2. 회의서류의 작성 배부에 관한 사항
3. 회의내용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실비수당) 외부인사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96. 5. 20)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96. 5. 20)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3.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시장

서울특별시

우100-744서울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전화 (02)3707-9155/전송3707-9169
 처리부서 : 사회과(서소문별관 제1동 4층) 담당 : 정경표

문서번호 사회65112-

시행일자 '98.12.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홍재룡
행정1부시장	전결	
보건복지국장	전 결	법무담당관 심사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담당자	이성욱	

제목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폐지규정(안)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98.7.1)으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가. 폐지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법부칙 제2조(폐지법률)

나. 시행일 : 발령한 날 부터

다. 폐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이웃돕기관리규정폐지규정 1부 끝.

(제2안)

수신 : 법무담당관

제목 :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폐지규정안 발령의뢰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98.7.1)으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제2조(폐지법률)

나. 시행일 : 발령한 날 부터

다. 폐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이웃돕기관리규정폐지규정 1부 끝.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1998.12.22	제 37 호
담당자	법제심사팀	행정부담당관
김광명	사무관	이정범 박승룡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98.7.1)으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법에 의거 제정·운용되고 있던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이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로 이관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 ※ 이웃돕기사업은 서울특별시 공동모금회로 이관되어 민간주도로 계속 수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1979.6.12 훈령제504호)

개정 1981.4.15 훈령제546호

개정 1988.5.7 훈령제6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 ①서울특별시 이웃돕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사회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2)주관과장은 접수한 기금을 이웃돕기기금 수입으로 별도 계정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관리금고설치) ①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금고 1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금고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이웃돕기 기금"이라 한다.

③기금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기금접수창구 상설) 사회과에 기금접수창구를 상설 운영한다.

제5조(기금수혜대상) 기금의 수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사회복지시설수용자

②생활보호대상자

③정착촌 음성질환자

④자활근로대동 불우단체

⑤불우직업소년

⑥보훈대상자

⑦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⑧사회봉사단체

⑨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⑩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제6조(기금의 사용구분) ①기탁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무상지원에 사용한다.

제7조(기금의 지출절차) 기금의 지출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이식의 도모) 기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식은 기금수입으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 및 결과보고) ①시장은 기금 취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감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케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관리 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케 할 수 있다.

③사회과장은 매년도 기금관리사항을 결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제정되어 있는 이웃돕기 성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개나리 상조금고에 이체한다.

부 칙('81.4.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5.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제정되어 있는 개나리 상조금고기금은 이 규정 시행일 로부터 이 기금에 이체한다.

서울특별시

우편번호 100-744 /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 3707-9155 / 전송 3707-9169
 사회복지과 과장 김경규 사무관 박성욱 담당자 정경표

문서번호 사회65112-279

시행일자 '98.12. 29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결	법령한 규정		지시		
접수	일자	12. 29	결재	박성욱	김경규
	시간	13 시			
	번호	2099			
처리과			공람		
담당자		김경규			

제목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폐지규정안 발령의뢰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시행('98.7.1)으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 외거 제정된 서울특별시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폐지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제2조(폐지법률)
- 나.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다. 폐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이웃돕기관리규정폐지규정안 1부 끝.

사회복지과장 김경규